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1567호 2024년 11월 15일(금)

규 칙

- 속초시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2
- 속초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3

고 시

- 하천점용허가 고시 4
-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(금호동 600-7번지 일원) 지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5

발행 : 시 민 소 통 과 (전화 : 639-3750, FAX : 639-2799)

속초시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4년 11월 15일

속 초 시 장

인

속초시 규칙 제1574호

속초시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

제3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.

1. 추정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속초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4년 11월 15일

속 초 시 장

인

속초시 규칙 제1575호

속초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

속초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예정금액”을 “추정금액”으로 한다.

3. 추정금액 1억 원 이하의 공사, 5천만 원 이하의 용역·제조·물품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

제2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한다.

1. 추정금액 5천만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하천점용허가 고시

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년 11월 12일

속초시장

1. 하천의 명칭	청초천	
2.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	성 명	에스케이텔레콤(주)
	주 소	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서원대로 149, 4층
3. 점용의 목적 및 개요	목 적	통신주 설치
	개 요	
4.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	위 치	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노학동 1265-148
	면 적	1㎡
5. 점용허가의 유효기간	2024. 11. 12.~2028. 12. 31.	

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(금호동 600-7번지 일원) 지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
속초시 금호동 600-7번지 일원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을 고시합니다.

2024년 11월 15일

속 초 시 장

1.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사항

가. 제한지역·제한기간

구 분	위 치	면적(m ²)	제한기간
금호동 600-7번지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	속초시 금호동 600-7번지 일원	1,019,535	지정고시일로부터 3년

나. 제한사유: 제한 지역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장기미집행 실효 대상 시설(영랑호 유원지) 로써 시설 해제시 무분별한 난개발이 예상됨에 따라, 자연을 보존하며 체계적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등 계획적인 개발계획의 수립 전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

다. 제한행위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개발행위
라. 허용행위
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목적의 공익 개발사업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제4항에 따른 재해복구 또는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
-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로서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의 결정(변경)과 관련하여 도시의 계획적 개발 유도 및 지역활성화, 형평성 있는 계획 수립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행위

2. 관련도서 비치(관계도면 : 실음생략)

- 관계도서는 속초시청 도시개발과 도시계획팀(☎ 033-639-2447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